

# 심 사 보 고 서

○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576호
----------	-------

2017. 4. 28.(금)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4월 11일

○ 회부일자 : 2017년 4월 14일

다. 상정일자 : 2017년 4월 20일

○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 출연목적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함

- 출연 예정액 : 60,000천원(도비 100%)
  - 17개 시·도 출연금 총액: 1,008백만원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평가대상 공기업 수(50%)
    - ※ 시·도별 공기업 수 구간 설정: 15개 시·도 1~4구간, 세종·제주 0.5구간
- 출연계획 (단년·반복사업) (단위: 천원)

구분 (기준보조율)	2016년			2017년 (D)	증감 (E=D-A)
	계(A=B+C)	당초(B)	추경(C)		
도비(100%)	60,000	0	60,000	60,000	0

###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 가. 법적근거 및 심의사항

-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법적 근거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 계획안의 심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출연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sup>1)</sup> 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내용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정책연구,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기관이고,

1)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대한 해석기준(행정자치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2015년 7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평가원 개편방안에 따라 재정력 지수와 공기업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정례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2016년도 60,000천원 출연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금은 지방공기업 경영지도.자문, 평가업무 지원사업, 정책 개발 및 세미나 지원, 정책연구지 보급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 우리 충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1부.

#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576
----------	-----

제출연월일 : 2017. 4. 11.

제안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 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함

### 출연 예정액 : 60,000천원(도비 100%)

- 17개 시·도 출연금 총액 : 1,008백만원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평가대상 공기업 수(50%)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시도별 공기업 수(1~4구간)로 구간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 출연계획 (단년·반복사업)

(단위: 천원)

구분 (기준보조율)	2016년			2017년 (D)	증감 (E=D-A)
	계(A=B+C)	당초(B)	추경(C)		
도비(100%)	60,000	0	60,000	60,000	0

# 1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재국	홍순석	장현호	220-2242

기관명	지방공기업평가원
-----	----------

출자·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 박동훈 이사장 (*재단법인→법정기관)</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서초동)</li> <li>- 인 력 : 34명(이사장1, 상임이사1, 전문위원 18, 행정지원직 14)</li> <li>-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경영지도, 자문, 사업타당성, 정책연구·교육 등</li> </ul> </li> </ul>
---------	---

출자·출연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 예정금액 : 60,000천원(도비 60,000천원)</li> <li>○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li> </ul>
----------	--

구 분	사업기간	2017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60					
시도및지방공기업지원사업비	1년	38					
지방공기업 정책연구컨설팅	1년	26					
지방공기업 발전지원사업 등	1년	12					
기본운영비 등	1년	18					
정보화사업비	1년	4					

- 시·도별 재정력 지수(50%) 및 평가대상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우리 도는 재정력 지수 0.564로 2구간, 공기업 수 18개로 2구간 위치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A+B)	분담 비율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충청북도	60	5.95%	0.564	2	30	18	2	30

출자·출연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평가원의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각종 지원사업 추진</li> </ul>
----------	---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li> <li>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li>○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출자출연 가능기관 명시</li> </ul>
------	--

지도감독부서인권(중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적 연구기관으로서, 각 시도는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li> <li>※ 각 시도 별 재정력지수, 공기업 수에 따라 차등 출연</li> <li>○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정책연구·컨설팅·사업타당성검토 등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li> <li>○ 특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계획·예산·결산 등은 자치단체에서 이사 5명(시도별 순번제 위촉)이 포함된 이사회(11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감독 가능</li> </ul>
--------------	--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li> <li>2. 출자·출연기관 현황</li> <li>3. 출자·출연사업계획서</li> </ol>
------	--



# 1-2 출자·출연 기관현황

##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전화번호 : 02-3489-2700			
					홈페이지:www.erc.re.kr			
주요연혁	- 1992. 3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 - 1994.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 - 2000. 1 재)한국자치경영협회로 명칭 변경 - 2002. 9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명칭 변경 - 2011. 4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 변경 - 2016. 6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변경 및 법정기관화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			
인원현황 (17.3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4명		33명		1명			
입원 (16.3월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박○○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2017. 1.20~2020. 1.19			
	상임이사	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장		2016. 11.24~2019. 11.23			
	당연직이사 (비상임)	6인	- 행자부(1) : 지방경제지원관 - 광역 시도(5) : 기획관리(조정)실장		당해직위 재임기간 -광역시도 윤번제 (2년임기)			
	위촉직이사 (비상임)	김○○	경기대학교 총장		2014. 4. 1~2017. 3.31			
		김○○	시군구청협의회 사무처장		2014. 4. 1~2017. 3.31			
	이○○	한국생산성본부 상무		2014. 4. 1~2017. 3.31				
감사(비상임)	장○○	우리회계법인 이사		2014. 4. 1~2017. 3.31				
주요기능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 공기업의 설립 및 투자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훈련 등							
자본금 <sup>1)</sup> (단위:백만원)		300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10,120 (‘92~’98까지 출연)		
최근3년 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8,598	
	일	예산액 <sup>2)</sup>	7,942	14,553		16,003	부채	1,451
	반	지자체 지원액 <sup>3)</sup>					자본 <sup>1)</sup>	17,147
2016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9,082			8,096		986		

-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 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1-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출연	60,000천원(도비)

## □ 목적 및 필요성

- 평가원의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 및 우수 전문인력 확충
-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투자타당성 심사 등 경영지원 사업 확대
- 지방공기업 임직원에게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경영역량 제고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일원화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영평가 지원

## □ 출연개요

- 사업명 :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출연금액 : 60,000천원(도비 100%)
- 사업내용 :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재원 구성('16년 기준)
  - ※ 자본수입 22.5%, 사업수입 49.9%, 출연금수입 25.5%, 기타 2.1
- 출연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 □ 산출기초

- 시·도별 재정력 지수(50%) 및 평가대상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우리 도는 재정력 지수 0.564로 2구간, 공기업 수 18개로 2구간 위치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A+B)	분담비율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비고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충북도	60	5.95%	0.564	2	30	18	2	30	

※ 재정력 지수 :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 17개 시·도중 16개 시·도 '17년 당초예산 확보

## □ 2016년 실적 및 2017년 계획(정책연구·컨설팅)

구 분	정책연구	컨설팅	비고
2016년	- 정책과제 12건 - 기획과제 3건	- 신설공기업 컨설팅(5개 기관) - 맞춤형컨설팅(12개 시·도, 16개 공기업) ※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조합의 방향(단양관광관리공단) - 피드백컨설팅(10개 시·도, 16개 공기업)	
2017년	- 정책과제 23건 - 수시과제 4건	- 신설공기업 경영컨설팅(8개 시·도, 12개 기관)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 맞춤형컨설팅(10개 기관) ※ 2차 맞춤형컨설팅 수요조사 예정(하반기 중)	

## □ 기대효과

-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연구지원으로 건전한 발전 도모
-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
- 지방공사의 출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기여
-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타당성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사업 추진 방지(예산낭비 사전 예방)
- 지방공사채 발행의 타당성검토로 효율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시
- 지방공기업 설립에 전문적인 타당성검토로 공기업 남설 방지
- 지방공기업 종사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연수 실시
-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한 무료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

# 참고 1

## 17개 광역시·도 출연금 배분기준 ※행자부 보고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기준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산정

□ 규모 : **1,008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59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1~4구간)를 설정

- 구간금액은 2016년과 동일하게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2구간 -40%)	세종, 제주	18	0.5 (2구간 -40%)	세종, 제주	18
1 (2구간 -20%)	0.5이하 ~	24	1 (2구간 -20%)	1~15	24
2 (기준구간)	<b>0.5~0.7이하</b>	<b>30</b>	2 (기준구간)	<b>16~25</b>	<b>30</b>
3 (2구간 +20%)	0.7~0.9이하	36	3 (2구간 +20%)	26~35	36
4 (2구간 +40%)	0.9초과 ~	42	4 (2구간 +40%)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평균구간 5억/17기관) 기준으로 20%씩 차등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79, 공기업 수 평균 : 21.1(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16	2017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계	1,014	1,008	-6	11.402	-	516	359	-	492
서울특별시	78	78		1.021	4	42	30	3	36
부산광역시	60	60		0.781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0.694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0.853	3	36	14	1	24
광주광역시	54	54		0.672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0.668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6	66		0.913	4	42	7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0.713	0.5	18	2	0.5	18
경기도	84	84		0.939	4	42	95	4	42
강원도	60	60		0.320	1	24	28	3	36
<b>충청북도</b>	<b>60</b>	<b>60</b>		<b>0.564</b>	<b>2</b>	<b>30</b>	<b>18</b>	<b>2</b>	<b>30</b>
충청남도	66	66		0.592	2	30	29	3	36
전라북도	54	54		0.463	1	24	18	2	30
전라남도	54	54		0.456	1	24	18	2	30
경상북도	72	66	-6	0.556	2	30	35	3	36
경상남도	66	66		0.697	2	30	31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0.500	0.5	18	5	0.5	18

**참고 2**

**2017년 시도별 출연금 예산 확보 현황**

기 관 명	출연금 예산 반영(백만원)			비 고
	출연요청 금액	본예산 반영 금액	추경 확보 계획 여부	
합 계	1,008	948		
서울특별시	78	78		
부산광역시	60	60		
대구광역시	54	54		
인천광역시	60	60		
광주광역시	54	54		
대전광역시	54	54		
울산광역시	66	66		
세종특별자치시	36	36		
경기도	84	84		
강원도	60	60		
충청북도	60	-	여	
충청남도	66	66		
전라북도	54	54		
전라남도	54	54		
경상북도	66	66		
경상남도	66	66		
제주도	36	36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의 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⑦~⑩ 생략